

일반대학원 장학 규정 시행세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3.10		16		
2	2011.9.1		17		
3	2012.5.9		18		
4	2013.11.1		19		
5	2014.4.22		20		
6	2016.5.27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일반대학원 장학 규정 시행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대학원 장학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삭제 <2007.9.1>

제3조 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① 특별장학금

1. 석사과정특별장학금 :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2. 박사과정특별장학금 :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② 조교장학금 <개정 2007.9.1>

1. TA장학금 : 교수의 강의 및 실험·실습을 보조하거나 소속 학과 외의 타 부서 행정지원을 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2. RA장학금 : 교수의 연구 및 기타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3. 근로조교장학금 : 학부과정의 교육시설의 유지,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학부과정 각 학부(과)에서 필요에 따라 선발한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<개정 2011.9.1>

③ 총학생회간부장학금 : 총학생회 간부로서 학생자치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④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: 신입생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⑤ 신입생성적최우수장학금 : 신입생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⑥ 삭제<2011.9.1>

⑦ 교외장학금 : 외부 장학재단, 공공기관, 기타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조건이 없을 시에는 대학원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

⑧ 공로장학금 : 대학 및 대학원에 공헌이 있는 자에게 학업정진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

⑨ 계약학과장학금 :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<개정 2007.9.1>

⑩ 산학연장학금 : 본교와 산학연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<개정 2007.9.1>

⑪ 석박사연계장학 : 본교 석사과정 졸업생이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본교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<신설 2008.1.1.>

- ⑫ 군위탁장학금 :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의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<신설 2014.4.22.>
- ⑬ 일우재단장학금 : 일우재단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<신설 2014.4.22.>
- ⑭ 연구장려장학금 :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<신설 2014.4.22.>
- ⑮ 외국인 특별장학 :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<신설 2016.5.27>

제4조 삭제 <2007.9.1>

제5조 (업무 시수) 조교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주당 1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조 하여야 하며, 규정 제8조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로 이중 수혜를 받는 조교장학생인 경우 주당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 (관리) 조교장학생을 지원 받는 부서장 또는 교원은 당해 학기 동안 조교장학생의 근무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7조 삭제 <2007.9.1>

제8조 (중복 수혜 및 장학금 총액 제한) ① 각종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. 단, RA장학 및 TA장학을 동시에 수혜 받을 시에는 RA장학금 전액과 TA장학금의 1/2을 지급하고, 신입생성적우수장학은 석사과정 특별장학, 박사과정 특별장학 및 RA장학과 중복 수혜할 수 없다. <개정 2007.9.1.>

② 삭제 <2007.9.1>

③ 장학금 중복 수혜 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교외장학은 포함되지 않는다.<개정 2011.9.1.>

④ 외국인 특별장학은 석사과정 특별장학, 박사과정 특별장학과 중복 수혜할 수 없다. <신설 2016.5.27>

제9조 (장학금의 반환 및 수혜자 교체) ① 장학금 수혜 학생이 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TA장학, RA장학 및 근로조교장학을 수혜 받은 학생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,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. <개정 2007.9.1>

② 교외장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연한 교외장학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③ 신입생 성적최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을 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된다.

제10조 삭제 <2007.9.1>

제11조 (선발방법) 장학 종류별 장학생 선발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① 특별장학 : 매 학기 각 학과 지도교수가 지정한 후보자를 주임교수가 대학원 장에게 추천한다. <개정 2007.9.1, 2011.3.10>

② 조교장학 <개정 2007.9.1, 2011.3.10>

1. TA1장학 : 대학원장은 매 학기 학과별 배정인원을 학과로 통보하며 주임

교수는 학과의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. <개정 2013.11.1>

2. TA2장학 : 대학원장은 매 학기 학과별 배정인원을 학과로 통보하며 주임교수는 지도교수가 지정한 후보자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며, 배정된 인원이 남을 경우 주임교수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1.1>
3. RA장학 : RA장학 선발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3.11.1>
4. 근로조교장학 : 대학원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부과정 학부(과)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초 필요인원 만큼의 근로조교를 선발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.

- ③ 총학생회간부장학 : 총학생회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. <개정 2007.9.1, 2011.3.10>
- ④ 신입생성적우수장학 : 장학생 성적 기준에 의거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, 성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- ⑤ 신입생성적최우수장학 : 장학생 성적 기준에 의거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, 성적 및 조건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- ⑥ 삭제<2011.9.1>
- ⑦ 교외장학생 :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하며 조건이 없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.
- ⑧ 공로장학 :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선발한다.<개정 2007.9.1, 2011.3.10>
- ⑨ 계약학과 장학 : 계약학과 설치 협약에 따라 선발한다.<개정 2007.9.1>
- ⑩ 산학연 장학 : 산학연 협약에 따라 선발한다.<개정 2007.9.1>
- ⑪ 석박사연계장학 : 본교 석사과정 졸업생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,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08.1.1.>
- ⑫ 군위탁장학 : 학·군협약에 따라 선발한다. <신설 2014.4.22.>
- ⑬ 일우재단장학 : 일우재단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선발한다. <신설 2014.4.22.>
- ⑭ 연구장려장학금 :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. <신설 2014.4.22.>
- ⑮ 외국인 특별장학 : 외국인특별장학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6.5.27.>

제11조의2 (장학생 추천) ① 학과 주임교수 또는 교수(지도교수 포함)가 추천을 할 때에는 학생의 경제사정, 학업성적 및 품행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② 장학추천 시 장학규정 제5조, 동규정 제6조 제3항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신설 2012.5.9>

제12조 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성적 최우수 장학금 계속 수혜 대상자와 교외 장학금 계속 지급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이어야 한다.<개정 2007.9.1, 2012.5.9>

제13조 (지급보고) 대학원장은 장학금 지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07.9.1>

부 칙

- ① 이 시행세칙 이외의 장학관계 사항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- ②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